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어떻게 바뀌었나

# 등록제 따른 등록관련 절차 등 규정

가정원예용 농약판매 등록기준 완화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동물 : 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약제를 말한다.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제3조(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등록증 사본(수입업에 한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농업과학기술 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방제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품 방제업등록의 경우에는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품검역소지소장을 거쳐 국립식품검역소장(이하 "식품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항공방제업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식품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및 방제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품검역소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시설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이 신고하여야 하는 인력·시설 또는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리인·자체검사책임자 또는 방제기술자의 변경
2. 시설의 이전
3. 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제조업 및 원제업에 한한다)
4.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의 품목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②제조업자등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변경된 인력·시설 또는 장비 등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조 점

제9조(폐업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휴업이나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등록증의 재교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는 경우외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만료 6월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상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상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연구기관) 농약관리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4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 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 시험성적서
2. 영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3. 영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중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

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목의 제조처방
2. 원제공급처

제16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품목등록에 관한 지위승계 관계서류와 품목등록증을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의한 당해 품목의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의 범위등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2조제2항의 규정은 변경등록신청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의 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①농업과학기술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2. 독성시험성적서
3. 부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②법 제16조제2항 본문 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

## 조 점

2. 영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③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6조의 규정은 원제등록에 관한 원제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수입농약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 내지 제19조나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수입농약등의 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가 이미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농약의 표시사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목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별 표시사항
  - 가.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제도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시험연구직 임용기 비제었다

1. 농약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의 품질·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영 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영 제4조제1항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을 비방하는 광고

제25조(자체검사성적서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전에 농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불량농약의 처리)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농약을 봉인하여 수거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검사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량농약처리요령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장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등이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는 당해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조 점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수출승인대상농약의 범위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하여야 할 농약 또는 원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람 및 가축 등에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등록이 취소된 농약 또는 원제
2.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정한 수출승인대상 농약 또는 원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대상 농약명 또는 원제명, 수출승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또는 방제업의 등록기준(제3조 내지 제6조관련)

※편집자주 : 판매업·방제업의 등록기준은 게재 생략

구 분	제 조 업	원 제 업	수 입 업
1.인력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관리인 1인이상 (1)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 또는 식물보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체검사책임자 1인이상 (1)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농화학·화학 또는 화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생물제제농약만을 생산하는 업체는 농생물학 또는 미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2)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4)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농약분석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농약제조업체·원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농약분석업무에 10년이상 종	○관리인 1인이상을 두되, 관리인의 인력기준은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함	○제조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하되, 원제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제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함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어떻게 바뀌었나

구 분	제 조 업	원 제 업	수 입 업
2. 시설 및 장비	<p style="text-align: center;">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가. 기본시설 및 장비</p> <p>(1) 실험실시설 및 장비</p> <p>(가) 실험실 면적</p> <p>1) 화학실험실: 33㎡이상</p> <p>2) 생물실험실: 33㎡이상</p> <p>(나) 실험용 포장: 1헥타아리이상</p> <p>(다) 화학실험기구</p> <p>1) 화학천칭(Cheical Balance) : 1대 (감도 0.1mg이하)</p> <p>2) 건조기(Dry Oven): 1대</p> <p>3) 수소농도측정기(pH메타): 1대</p> <p>4) 순수채취기: 1대</p> <p>(라) 생물실험기구</p> <p>1) 항온기: 1대</p> <p>2) 고압살균기: 1대(압력 15파운드이상)</p> <p>3) 실체현미경: 1대</p> <p>4) 저울: 1대</p> <p>(2) 보관창고시설</p> <p>(가) 면적: 660㎡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면적 165㎡이상)</p> <p>(나) 바닥: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p> <p>(다) 환기구: 보관창고의 규모에 맞는 벤지레타등 환기시설의 설치</p> <p>나. 제제형태별 시설 및 장비</p> <p>(1) 유제 또는 액제</p> <p>(가) 원제처리장치</p> <p>1) 용해조 또는 혼합조</p> <p>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p> <p>(나) 제품혼합조</p> <p>(다) 저장조</p> <p>○ 용량 3천 l 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용량 1천 l 이상)</p> <p>(라) 포장시설</p> <p>○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p>	<p>가. 기본시설</p> <p>(1) 실험실시설</p> <p>○ 해당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p> <p>(2) 보관창고시설</p> <p>(가) 면적: 165㎡이상</p> <p>(나) 바닥: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p> <p>나. 원제제조시설</p> <p>(1) 원료계량장치</p> <p>(2) 화학반응 또는 발효장치</p> <p>○ 반응의 특성에 따라 온도·교반속도 등의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미생물 제제의 경우에는 발효조를 갖출 것</p> <p>(3) 건조시설</p> <p>○ 여과기·원심분리기·건조기·용매유지장치</p> <p>(4) 포장시설</p> <p>○ 정량계량을 위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용량 및 중량의 조절이 가능할 것</p> <p>○ 계량장치</p> <p>(5) 기본 제조시설로서 원제의 합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원제를 합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p>	<p>가. 실험실시설</p> <p>○ 제조업의 실험실시설과 동일하되, 실험용 포장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검사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p> <p>나. 보관창고시설</p> <p>○ 제조업의 보관창고시설과 동일하되, 면적은 330㎡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면적 165㎡이상)을 갖출 것</p> <p>다. 농약의 품목을 수입하여 분포장 또는 소포장할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기준중 해당 품목의 제제형태별 저장조시설 및 포장시설을 갖출 것</p> <p>라. 원제만을 수입하는 경우</p> <p>○ 원제업의 실험실시설 및 보관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검사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p>

## 조 점

구 분	제 조 업
	(마)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 제품량으로 1천 l 이상 (2)분제·수화제 또는 수용제 (가)원제처리장치 1)용해조 또는 혼합조 2)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제품혼합조 (다)저장조 ○용량 -분제: 6천kg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용량 3천kg이상) -수화제·수용제: 2천kg이상(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용량 1천kg이상) (라)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마)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제품량으로 3천kg이상. 다만, 수화제·수용제는 1천kg이상 (3)조립식 입제 (가)원제처리장치 1)용해조 또는 혼합조 2)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제품혼합조 (다)반죽시설 (라)조립시설 (마)선별기 (바)저장조 ○용량 6천 l 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용량 3천 l 이상) (사)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아)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 제품량으로 3천kg이상 (4)흡착식 또는 도말식 입제

구 분	제 조 업
	(가)원제처리장치 1)용해조 또는 혼합조 2)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제품혼합조 (다)건조시설 (라)저장조 ○용량 6천 l 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용량 3천 l 이상) (마)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바)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제품량으로 3천kg이상 (5)액상수화제 (가)원제처리장치 1)용해조 또는 혼합조 2)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제품혼합조 (다)분쇄기 (라)저장조 ○용량 1천 l 이상(그 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용량 500 l 이상) (마)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바)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제품량으로 1천 l 이상 (6)상기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중 공용이 가능한 시설은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7)비선택성 제조제 ○상기 제제형태별 기본 제조시설을 따로 갖출 것 (8)기타 ○상기 제조시설로 제조가 불가능한 농약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제형태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편집자주] 기타 별표는 계재를 생략합니다. 농약관리법령 및 제 규정에 관한 내용은 근간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